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 제출년월일 : 2016. 1. .

제 출 자:평창군수

1. 제안이유

O 「경관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0조
 - 상위법에 따른 "평창군 경관위원회" 규정 신설
- 조례안 제36조제1항제4호
 -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의제사항 중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제36조의2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
	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
	속 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이
	하"위원회")를 설치한다.
<u>제30조</u> (생 략)	<u>제36조의2</u>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6조(심의 의제 등) ① 다음 각	제36조(심의 의제 등)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위원회	
에 경관분야가 별도로 구분되고	
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	
으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	<u><삭 제></u>
가를 받은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도시주택과 김 찬 수
연 락 처	(033)330-2470

관계 법령

□ 경관법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삭제